

발간등록번호 11-1790387-000569-10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질병관리청

발간목적

본 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업무 수행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발간이력

기관 및 부서	업무
2017. 2. 제정	• 2017년 의료관련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2018. 6. 개정	• 2018년 의료관련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2019. 3. 개정	• 2019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2020. 1. 개정	• 2020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2021. 4. 개정	• 2021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2022. 4. 개정	•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2021년	2022년	비고
1. 사업개요			
3	1. 개요 라. 사업수행체계 - 시·도 및 시·군·구 역할 - 권역 중심병원 역할 - 권역 참여병원 역할 (추가)	1. 개요 라. 사업수행체계 - 시·도 및 시·군·구 역할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협의체 구축·운영 추가 - 지역 중심병원 역할 - 네트워크 참여·협력병원 감염관리 기술 지원 추가 - 지역 참여병원 역할 - 지역 협력병원 감염관리 기술 지원 - 지역협력병원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참여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 지자체 역할 구체화 - 타사업과 용어 혼동이 없도록 용어 변경 ('권역'→ '지역') - 기존에 수행 중인 중심병원, 참여병원, 협력 병원 역할 명시
4	마. 기관별 역할 2)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마. 기관별 역할 2)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축·운영 * 시·도 담당 공무원이 협의체 회의를 주관 하여 운영	-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역할 중 협의체 구축·운영 추가
5	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의료기관 <권역 중심 및 참여 병원> 삭제 (추가)	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의료기관 <지역 협력병원>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 - 의료관련감염병(전수감시) 신고·보고 -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대응·관리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교육·협력 참여 - 지역 네트워크 협의체 참여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 지역 협력병원 참여 확대('21년 시범참여)에 따라 협력병원 역할 추가

페이지	2021년	2022년	비고
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체계도)〉 (추가)	〈그림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체계도)〉 〈그림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참여병원 역할 예시 (체계도)〉 추가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의료기관별 역할 명료화 - 참여병원의 역할 예시 제공
9-10	2. 사업 운영 및 관리 나. 사업운영 (추가)	2. 사업 운영 및 관리 나. 사업운영 • 지역 집단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과정 운영 -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수행(연 1회 이상)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운영 -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및 공유·대응 체계 활성화 방안 토의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교육 자료 등 제작 및 배부	- 의료기관의 역할에 명시된 내용을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추가 기술
Ⅲ. 예산 집행 및 정산			
33	6.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나. 지급기준 • 경비(다과비) 3,000원	6.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나. 지급기준 • 경비(다과비) 4,000원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기준 변경
Ⅳ. 참고서식			
38	서식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계획서(의료기관용)	서식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의료기관용) o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세부 내용 추가	- 참여 의료기관의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상세 제공
Ⅴ. 관련규정 및 자주 묻는 질문			
66-100	참고1~6. 관련법령, 규정, 지침	참고1~6. 관련법령, 규정, 지침 개정사항 반영	- 관련 규정 현행화

목 차

Contents

PART I. 사업개요

- 1. 개요 2
- 2. 사업 운영 및 관리 7

PART II. 사업 운영 원칙

- 1. 사업 운영 관련 법규 12
- 2. 예산 집행 및 정산 원칙 13
- 3. 영수증 및 증빙서류 처리 기준 17

PART III. 예산 집행 및 정산

- 1. 기관별 운영비 집행 및 정산 20
- 2.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23
- 3. 인건비 집행 기준 25
- 4. 일반수용비 집행 기준 27
- 5. 여비 집행 기준 30
- 6.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33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PART IV. 참고 서식

서식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시·도용)	36
서식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의료기관용)	38
서식 3.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시·도용)	40
서식 4.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의료기관용)	41
서식 5.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표(시·도용)	43
서식 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표(의료기관용)	44
서식 7. 사업계획 변경서	46
서식 8.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8
서식 9.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49
서식 10.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집행현황	50
서식 1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51
서식 12.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내용	52
서식 13.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영수증	53
서식 14. 교육 및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양식	54
서식 15. 교육 및 회의결과 보고서 양식	55
서식 16. 방명록	56
서식 17. 출장복명서	57
서식 18. 유류비사용대장	58
서식 19.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59
서식 20. 출장 경비 증빙서류	60
서식 21.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	61

목 차

Contents

PART V. 관련 규정 및 자주 묻는 질문

참고 1. 관련 법령	64
참고 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67
참고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84
참고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86
참고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90
참고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94
참고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99
참고 8.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101
참고 9. 자주 묻는 질문	102

Part I

사업개요

1. 개요

2. 사업 운영 및 관리

1 개요

가. 사업목적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신뢰성 있는 감시자료수집
- 의료관련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사업 수행을 통해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나. 사업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수행 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의료관련감염병(제2급, 제4급 감염병) **신고·보고 및 표본감시기관에 표본감시에 필요한 사항 요청 및 필요한 경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제67조제2호 및 제4호

다. 사업내용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구축·운영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 및 참여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지역 네트워크 운영

라. 사업수행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중앙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총괄 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운영 지원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관리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계획 수립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협의체 구축·운영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행정 지원
의료 기관	지역 중심병원 (종합병원 이상)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 • 네트워크 참여·협력병원(요양병원) 감염관리 기술 지원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참여병원 (병원 등)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참여 • 지역 협력병원 감염관리 기술 지원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지역 협력병원 (요양병원)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참여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마.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계획 수립·시행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예산지원 등 사업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교육·훈련 및 사업 홍보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정
-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진단기준 및 사업 관련 지침 개발

2)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구축·운영〉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관리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체계적인 관리 운영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축·운영
 - ※ 시·도 담당 공무원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하여 운영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행정지원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지원
 - *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감시 및 예방관리 활동 현황 조사·관리·감독 등
 - 예방·관리사업 예산 관리·집행·정산 등

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의료기관

〈지역 중심병원〉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활동 수행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대응·관리
-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운영 및 실적보고
 - 지역 네트워크 협의체 지원 및 참여
- 지역 집단감염 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과정 운영(참여 및 협력병원 대상)
- 지역 참여병원 및 협력병원 감염관리 지원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성·운영(그림 1 참조)
 - * 실시간 네트워크 운영 방안 마련, 참여 의료기관 역할 조율 등
 - 참여병원 및 협력병원 예방·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필요시 자문집 발간)
 - 의료관련감염병 유행관리 대책 자문
 -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운영, 워크숍 개최 등

- 지역 참여병원의 협력병원 지원 담당 분야 조정(그림 2 참조)
 - * 예) 참여병원 1: 감시활동, 유행대응, 2: 손위생, 격리지침, 참여병원 3: 소독과멸균, 환경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기타 행정업무

〈지역 참여병원〉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활동 수행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대응·관리
- 지역 참여병원 감염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교육·훈련 과정 참여
 - 지역 네트워크 협의체 참여
- 지역 협력병원(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원
 - 의료관련감염병 유행관리 대책 자문, 교육·훈련·견학 기회 제공
 - 지역 네트워크 내 담당 분야 중심의 지원 활동
 - * 실시간 자문 체계 운영 검토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기타 행정업무

〈지역 협력병원(요양병원)〉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
 - 의료관련감염병(전수감시) 신고·보고
 -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대응·관리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교육·훈련 과정 참여
 - 지역 네트워크 협의체 참여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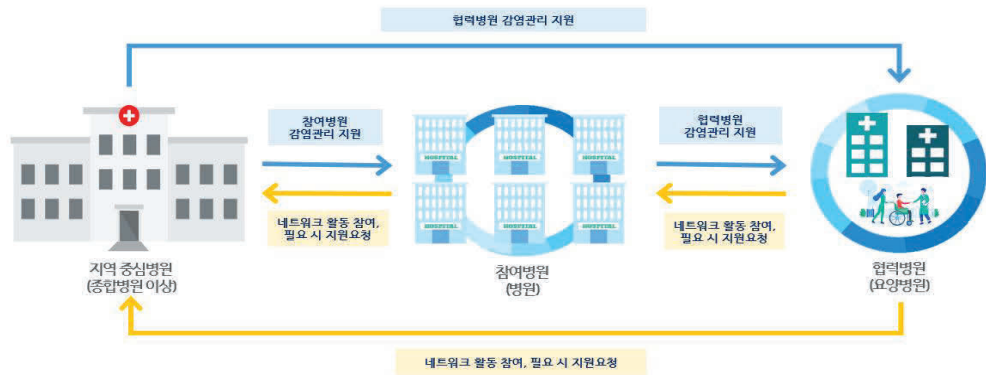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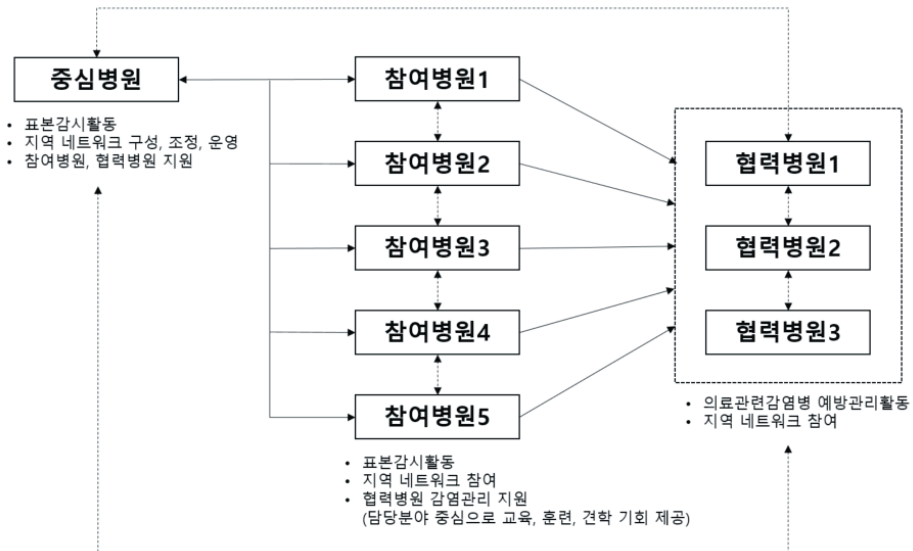
III

IV

V



〈그림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그림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참여병원 역할(예시)〉

바. 사업 지원기관 및 보조율

- 지원기관: 17개 시·도
- 회계구분: 국민건강증진기금
- 보조구분: 경상보조
- 보조율: 국비 100%
- 예산과목: 의료관련 감염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6400-6432-308-330)

2 사업 운영 및 관리

가.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 사업계획 (서식 1, 2 참조)
 - (작성방법) 사업의 필요성, 목적, 주요사업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등 일목요연하게 연계되도록 작성
 - *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성한 중심병원은 협력병원 운영을 계획서에 구분하여 작성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활동 및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서 작성 필요
 - (지자체) 의료관련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구축·운영
 - (주요 사업내용)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관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의료기관 행정지원 계획 등 제시
 - (지역 중심병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활동
 - (주요 사업내용)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및 유행 시 대응·관리, 지역 집단감염 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과정 운영, 지역 참여·협력 병원 감염관리 지원,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운영 계획 등 제시
 - (지역 참여병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활동, 감염관리 활동 계획, 협력병원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원 등 제시
 - *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에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하여야함
- 실적보고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내역별 결과를 보고(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정산결과도 함께 작성 (서식 3, 4 참조)
 - (자문) 일시, 장소, 자문내용, 자문결과 등 제시
 - (교육)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제시
 - (질향상 활동) 단년도 및 지속적 질향상 활동의 경우 배경, 방법, 결과 등은 구체적(정량화 등)으로 제시

I

II

III

IV

V

나. 사업 운영

● 표본감시활동 의료관련감염병 신고

- (발생신고) 7일 이내 신고

- 의료관련감염병환자(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발생 신고

-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1.cdc.go.kr>) 또는 신고서(서식*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참고) 20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안내 참고('22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 (내용)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정비, 표본감시 자료 비교 분석, 표본감시 담당자 감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타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표본감시 활동 등

● 회의 및 교육

- 계획 보고

- 회의 및 교육 추진 계획(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안건 등 포함) 수립, 사업수행기관장에게 보고

※ 긴급한 회의 및 교육 경우 계획보고 생략 가능

- 결과 보고

- 회의 및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결과, 향후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기관장에게 보고

● 교육 및 세미나 운영

- (교육 및 세미나) 2달에 1회, 회당 2시간 이상 수행

- (강사구성) 지역 중심병원 내 전문가 활용, 타 지역 중심병원 전문가 및 감염관련 전문가 초청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 (프로그램) 지역 중심병원이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참여병원 및 협력병원의 교육 수요조사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선택 등)

- (워크숍) 감염관련 활동사례 및 최신정보 공유 등(연 1회 이상)

※ 참고사항

- (보고서) 교육 배경 또는 목적, 참석대상, 장소, 강의시간, 강의내용 등 명시
- (예산집행) 강연자 수, 강의시간, 기타 교육에 필요한 제반내역 등을 계산하여 계획, 집행 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지역 집단발생 대비 시나리오 훈련과정 운영
 -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수행 (연 1회 이상)
-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및 유행대책 자문
 - (자문내용) 격리,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환경관리, 소독과 멸균, 감염 유행 대응 등 의료기관 전반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문형태) 자문 요청서, 자문 회신서를 통한 공식 자문, 전자우편, 그룹대화방, 필요시 현장 방문 자문 등
 -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 등 구두 자문 지양
 - (자문결과) 모든 자문내용을 문서화 공유 및 보관,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자문집 발간 및 배부

※ 참고사항

- (보고서) 자문결과는 범주화하여 수치로 계산
(예: 격리 5건, 소독과 멸균 5건 등, 핵심내용 기재)
- (예산집행) 자문료 지급형태로 외부전문가 자문가능(증빙서류 필요)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감염관리활동(질향상활동) 기획 및 수행
 - (기획 및 수행) 사업년도 내 1회 이상의 질향상 활동
 - (수행주기) 1년 이내, 필요시 지속적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실행가능
 - (방법) 중심병원과 참여 의료기관이 함께 수행
 - * 기존에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질향상활동 공유·연계
 - * 신규 질향상활동 기획·수행
 - * 사업관리자(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질향상활동 수행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감염예방을 위한 중재활동
 - * (주제선정)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선정, 예방효과가 크다고 증명된 중재활동 수행, 기존에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질향상활동, 사업관리자(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질향상활동 등

※ 참고사항

- (보고서) 감염예방 관련 질향상활동 계획(배경, 목적, 평가지표 등), 실적보고 시 단년도 및 지속적 질향상활동의 경우 중재방법, 중재활동 결과
- (예산집행)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가능(증빙서류 필요)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 감염관리 정보 공유·연계 시스템 운영
 -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및 정보 공유·대응 체계 활성화 방안 토의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교육 자료 등 제작 및 배부

다.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감사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업 평가의견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7 참조)
 - (의료기관) 시·도를 통해 승인요청 / (질병관리청) 승인여부 통보
 - ※ 단, 경비배분(비목간) 변경 시 총액 대비 중증병원 10% 이하, 참여병원 30% 이하는 내부결재 후 자체 변경 가능함

※ 〈참고〉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21.7.28.)

제14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보조사업부서는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 사업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 인정한다.
-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기간 중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조사업자등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서 등이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금액에 포함한다.

Part II

사업 운영 원칙

1. 사업 운영 관련 법규
2. 예산 집행 및 정산 원칙
3. 영수증 및 증빙서류 처리 기준

Part II

사업 운영 원칙

1 사업 운영 관련 법규

- 사업의 계획·수행과 예산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근거에 의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안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지도에 따름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예산 집행 및 정산 원칙

가. 예산 집행의 원칙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제41조(벌칙)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관에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 강사료, 회의수당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그 외 예산의 집행은 기관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카드의 사용을 자제함

나. 보조금 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사업 내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I

II

III

IV

V

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라. 예산의 정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서식 9 참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을 완료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간접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부정수급방지 대책

- 방지대책
 - 보조사업 관리자 등 교육실시
 - 사업운영 등 관련사항 외에 부정수급방지 및 적발될 경우 조치사항 등 반영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민간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준수
 -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기관 선정 시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추천 및 확정
 - 부정수급 책임 처벌 강화
 - 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지급 중단 등의 조치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교부통지 실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 보조사업 집행 점검 및 투명성·효율성 강화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목적대로 집행 안내 및 점검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본 사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법하게 집행하시고, 예방·관리사업 기관에게 안내하여 교부금 부정 수급 및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 정보공시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 ※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36조의 2,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적용범위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정보공시 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를 완료해야 함

세부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참고

3 영수증 및 증빙서류 처리 기준

가. 영수증 관리

- 보조사업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가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1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 입금 활용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 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집행액(카드, 현금 포함)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집행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법인카드(e나라도움 등록) 결제 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부서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나. 증빙서류

-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출요청서에 결재자란이 포함되어야 함
 - ※ 예시: 입금내역, 해당 공문,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등
- 시외교통비를 집행할 경우 공문 또는 출장복명서(일시, 장소, 내용 등) 및 해당 영수증(기차표, 버스표, 톨게이트 영수증, 당일 주유비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함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I

II

III

IV

V

Part III

예산 집행 및 정산

1. 기관별 운영비 집행 및 정산

2.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3. 인건비 집행 기준

4. 일반수용비 집행 기준

5. 여비 집행 기준

6.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Part III

예산 집행 및 정산

1 기관별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가. 운영비 집행

- 표본감시기관 지역 간담회 개최 및 표본감시기관 대상 교육, 홍보 등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관리 및 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소속된 시·군·구 보건소에 예산 배정 가능함. 단,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및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배정은 안됨

나. 예산 정산

- 시·도 운영비: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한 서식(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 시·도에서 집행한 운영비의 이자발생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예방·관리사업 기관 등)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
- 의료기관 운영비: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한 서식(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료기관별 정산결과를 작성·제출
 - 질병관리청의 요청 시 예방·관리사업 기관으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관리

〈의료기관〉

가. 운영비 등 집행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및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으로 집행 가능
- 감염관리실 소속 감염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세부사항	비고
인건비		• 중심병원에서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증명,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 및 수행 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마지막 달 인건비) 등 증빙첨부
운 영 비	일반 수용비	회의 참석비 (자문회의 포함) • 내·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지급되는 비용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 수당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109조3에 의해 지출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가능 • 국내 감염관련 학회, 연수과정 참석 시 학회비, 연수비 ※ 기관 당 연 2회, 한회 당 2명 가능	• 자문비, 강의료, 등록비 형태로 계좌이체 지급(방명록: 일시, 회의명, 성명, 소속, 생년월일, 은행계좌, 지급액, 서명 등 명시)
		인쇄비 및 유인비 • 사업수행 관련 회의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복사·인쇄비용	• 인쇄사양서, 견적서 등 증빙 첨부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 물품 구입 비용	• 거래명세표, 내부결재 등 증빙 첨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질향상활동과 관련된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념품,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재료비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손소독제, 손배지 구입 등 • 기타 소모성 재료 구입

구분		세부사항	비고
여비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 증빙서류: 관련 공문 혹은 출장복명서, 교통비 영수증 등	예방·관리사업 업무 등과 관련된 국내여비에 한함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임차료(계약서 첨부) 등의 비용 ※ 증빙서류: 방명록, 결과보고서, 영수증 등	관련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에 한함

※ 협력병원 활동 지원비는 협력병원 지원 활동 운영비로 사용해야함

나. 예산 정산

- 예산의 정산은 다음 해 초에 이루어지며 각 사업기관은 연 1회 정산보고서 및 세부 집행내역(영수증, 증빙자료 일체)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한 서식(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거 정산결과를 제출

※ 세부사항은 예산의 정산부분 참고

2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가. 항목별 설명

비목명	세목명	항목	산정기준
인건비 (110)	인건비 (110)	참여연구원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라 산정(중심병원에 한함)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회의참석비 (자문회의 포함)	• 내·외부 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 수당 • 국내 의료감염관련 학회, 연수과정 참여 시 등록비
		강사료	• 워크숍 및 세미나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관련 참여 의료기관 대상 교육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질향상 활동을 위한 교육 (* 기관의 자체교육 강사료 제외 단, 타부서 직원 지급 가능)
		인쇄비 및 유인비	• 사업 수행 관련 회의 및 교육 자료(소책자, 보고서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복사·인쇄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 물품 구입의 비용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질향상 활동과 관련된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재료비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업무 추진비 (220)	사업 추진비 (01)	사업추진비	•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의 비용

I

II

III

IV

V

나. 항목별 예산 집행 및 유의 사항

- 본 예산은 사업수행 주체인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소속 감염관리 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적용·사용될 수 있음
- 본 예산 집행과정 중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주요예산 집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인건비 집행 기준

가. 적용기준

- 중심병원에서 지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급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름

다. 계상기준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상함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정 기준
 -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 * 다만, 연구기관과 참여연구원이 협의 하에 미지급(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정산식
 - * $\text{인건비(원)} = \text{인건비 기준단가(원/월)} \times \text{연구참여기간(월)} \times \text{참여율(\%)}$

〈2022년 참여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월)	6,654,052	5,102,238	3,410,674	2,558,092

※ 기준단가 : 1개월, 참여율 100% 기준,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불가

※ 개인별 참여율을 곱하여 인건비 계상

〈연구원 등급별 기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라. 사용 및 정산기준

-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인건비는 매월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참여연구원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없이 변경된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 참여연구원간 인건비 조정 집행 불가(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낮추어 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는 경우)
- 정산시 증빙자료

-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계좌이체 증명
- ▶ 인건비 지급 예정확인서 및 수행기관 내부 결재 공문 사본(마지막 달의 지급예정 인건비)
- ▶ 변경 시 관련 문서 등

4 일반수용비 집행 기준

가. 적용범위

1) 회의 참석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회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자문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인력 제외

구 분		지급 기준
자문회의	• 자문비	• 최초 1시간 : 150,000원 • 초과 1시간 : 50,000원 • 지급 상한 : 200,000원
회의수당	• 관련 회의 참석비 (월 2회까지 지급가능)	• 최초 2시간 : 150,000원 • 초과 1시간 : 50,000원 • 지급 상한 : 200,000원
학회 및 연수과정등록비	•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등록비	• 기관 당 연 2회 참석가능 - 1회 참석 시 최대 2명으로 제한 - 등록비를 제외한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지급할 수 없음(개인이 납부)

※ 회의수당은 총 운영비의 20% 미만으로 제한함

- 1일당 150,000원내(서면회의 100,000원내) 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1일 최대 200,000원)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본 여비규정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학회등록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 등록도 가능(사유 등 공문 첨부)
-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비, 회의수당의 경우 총액이 아닌 1회 단위로 계좌이체 함

예) 3.10. 자문비 100,000원, 3.20. 자문비 100,000원으로 3.30. 계좌이체 할 경우
 ⇒ 계좌이체 시 200,000원이 아닌, 100,000원 × 2회 이체

- 구비서류

- 지출요청서 및 회의 참석비 지급명세서(성명,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서명)
- 관련 공문(내부결재, 참석요청 공문, 학회 및 연수과정명, 등록비 등)
 - ※ 공문에 회의 참석비 지급대상, 금액, 예산과목 등 명시
- 학회 및 연수과정은 등록비 납부 영수증 및 학회 안내문(일정, 프로그램, 등록비 등) 첨부

2) 강사료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강의(Ⅰ)	최초 1시간	230,000원	•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2시간 이상	350,000원	
일반강의(Ⅱ)	최초 1시간	120,000원	• 일반강의(Ⅰ) 이외의 강사
	2시간 이상	220,000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훈령 75호, 2022.2.24.)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최초 1시간은 30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산출)
- 강사료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본 여비규정 내에서 **운임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지출요청서
- 강사료 지급명세서(성명,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서명)
- 관련 공문(내부결재, 출강요청 공문 등)
 - ※ 공문에 강사명, 강사료, 예산과목 등 명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강의료 등 사례금이 125,000원 초과 시 징수세율 8.8%
(기타소득세 8% + 주민세 0.8% 공제)

3) 인쇄비 및 유인비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자료, 회의자료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소책자 등 제작·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실소요금액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회의자료 등	"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문헌복사비	40원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책자 제작 예시〉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000교육자료	A4	200페이지	20개	참여자 수

4) 사무용품 등 구입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용지, 사무용품 등 소요되는 비용
 -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구입 등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음

5)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예방·관리사업 관련 안내 및 행사 홍보물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기념품,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홍보물 제작 등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카드(e나라도움 등록) 사용 영수증 등
- 관련 공문(내부결재, 구매 및 인쇄계획 등)
- 지급명세서, 구매 및 제작 관련 2개 이상 견적서(최저 금액으로 낙찰), 물품사양서,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5 여비 집행 기준

가. 적용범위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업무 등과 관련된 국내 여비에 한함
- 관련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운임, 식비, 숙박비 등

나. 지급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름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승차권, 통장입금증, 법인(개인)카드 사용영수증 등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 출장복명서 등

〈여비 종류〉

구 분	내 용
운 임	교육 및 세미나, 학회참석 등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석 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석 시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관할 행정 구역(근무지) 외 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교육 및 세미나 학회등 참석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이코노미)	실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	실비 (상한액; 20,000원)

※ 제주도 등 출장 시 항공수단을 이용할 경우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함

〈관할 행정 구역(근무지) 내 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숙박비 (1박당)	일비(식비포함) (1일당)
교육 및 세미나 학회등 참석	-	-	-	-	-	실비 (상한액: 아래금액 참조) - 출장시간 4시간 미만: 10,000원(운임만) - 출장시간 4시간 이상: 20,000원(운임+식비)

※ 위 지급액 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 불가

-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함
- 세미나, 심포지엄,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 지급기준) 거리(km)×유가(opinet.co.kr)/연비

- 자동차 연료비 :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유가를 적용하여 자동차 연료비를 지급

※ 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지급 단가〉

구분	거리	유가	연비	산출식
휘발유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유가 (opinet.co.kr)	13.30	여행거리 × 유가 ÷ 연비
경유			14.30	
LPG			9.77	

- 주차료 : 1일 최대 3시간, 18,000원 이내 (주차 영수증 첨부 시 지급)

(기본 30분 : 3,000원, 10분당 : 1,000원 추가)

- 통행료 : 실비지급(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지급)

- (통행료 지급기준)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하이패스 영수증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출된 영수증 (복사본은 미지급)

※ 출장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영수증

※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장애인 운전의 경우
- 기타 위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행할 경우 부서장 이상 결재를 득하는 경우

6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가. 적용범위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회의, 교육, 워크숍 등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 행사 진행관련 **진행 인력**에 대한 운임, 숙박비 등은 여비에서 집행
 - 임차료
 -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적용기준: 실소요금액(계약서 첨부)

나. 지급기준

- 회의 등 진행비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e나라도움 등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회의 및 교육 경비의 집행 기준

[(외부)자문회의 등]	소 계	원
경비(다과비 및 식비)	20,000원 × 인 × 회 =	원
[(내부)자체회의 및 일반교육]	소 계	원
경비(다과비)	4,000원 × 인 × 회 =	원

다. 증빙서류

- 업무추진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근거를 첨부하여 지출하는 것임
- 지출요청서, 법인카드(e나라도움 등록) 사용 영수증 등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참석자 방명록, 세금계산서 등
 -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4)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은 지양해야 함
-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Part IV

참고서식

- 서식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시·도용)
- 서식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의료기관용)
- 서식 3.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시·도용)
- 서식 4.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의료기관용)
- 서식 5.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표(시·도용)
- 서식 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표(의료기관용)
- 서식 7. 사업계획 변경서
- 서식 8.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9.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 서식 10.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집행현황
- 서식 1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 서식 12.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내용
- 서식 13.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영수증
- 서식 14. 교육 및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양식
- 서식 15. 교육 및 회의결과 보고서 양식
- 서식 16. 방명록
- 서식 17. 출장복명서
- 서식 18. 유류비사용대장
- 서식 19.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 서식 20. 출장 경비 증빙서류
- 서식 21.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

Part IV

참고 서식

서식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시·도용)

사 업 명			
사업부서		협력부서	
예산과목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	○ 목적 ○ 세부목표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 2022년 중점 사업(2021년 대비 2022년 주요 변경사항 등)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산출내역서(소요예산)

비 목 명	예산액(원)	산출내역	비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계			

I

II

III

IV

V

서식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의료기관용)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소 속 부 서		E-MAIL	
			FAX	
예 상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타 예산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년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관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서명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사업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총계	국고보조금	기타
	천원	천원	천원
○ 사업 내용 요약 (2021년 사업 대비 변경사항 등, 2022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목적 - 세부목표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활동 · 의료관련감염병 지역 네트워크 활동 · 기타 활동(협력병원을 포함하는 경우는 협력병원 대상 별도 사업 추가)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산출 내역서(소요예산)

비목명	예산액(원)	산출내역	비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소계			

서식 3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시·도용)

사업명			
사업부서		협력부서	
예산과목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	○ 목적 ○ 세부목표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 사업 추진 내용 및 실적 - 주요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 사업 실적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결론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예산 정산내역서

비 목 명	집행내역	금액(원)	비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소 계			

서식 4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 (의료기관용)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소 속		E-MAIL			
	부 서		FAX			
예 상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타 예산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 서명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I
II
III
IV
V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국고보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 사업 내용 요약(2022년 주요결과를 요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목적 - 세부목표			
○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주요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 사업 실적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비 목 명	집행내역	금액(원)	비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소 계			

서식 5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표(시·도용)

의료관련감염병 현황조사표(시·도용)

시·도		일시	년 월 일 시
성 명		소속/직위	

조사내용	결과
1. 의료관련감염병 시·도 운영비 집행관련 사항	
1-1. 시·도 운영비 사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운영비 사용기관)	☐ 시·도 ☐ 보건소 이관
1-2. 시·도 운영비는 어떠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홍보자료 제작 ☐ 대상자 교육 ☐ 간담회 개최 ☐ 기타()
1-3. 본 사업을 위한 예산규모는 적정합니까?	☐ 적정 ☐ 예산부족 ☐ 예산과다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관 점검	
2-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관 점검 방법을 체크해 주세요.	☐ 유선 ☐ 현장방문
2-2. 점검 내용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사업비 집행 ☐ 사업 진행사항 ☐ e나라도움 정산내역 ☐ 기타()
2-3. 점검 후 미비점 및 개선사항 등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주셨나요?	☐ 예 ☐ 아니오
2-3.1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2-3. “예” 라고 체크한 경우)	☐ 유선 ☐ 공식 문서
2-4.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수행 중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관별 사업비 책정: 의료기관당 사업비 지급액의 적절성 사업비 세부 지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관련 자침의 적절성	☐ 모집기관 선정기준 ☐ 기관별 사업비 책정기준 ☐ 사업비 세부 지출기준 ☐ 기타()
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자료 활용	
3-1.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한 자료를 월단위로 환류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1 있다면 환류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 회의 및 보고 ☐ 정책결정 참고자료 ☐ 기타()
4. 기타	
4.1.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및 예방·관리사업에 바라는 점 또는 개선점을 적어주세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서식 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표(의료기관용)

의료관련감염병 현황조사표(의료기관용)

의료기관명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면담자		소속/직위	
연락처		조사자	

조사내용	결과
1. 국고보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1-2. 비목별 국고보조금 지출(총 예산 대비) 비율은?	☐ 일반수용비 ()% ☐ 업무추진비 ()% ☐ 여비 ()% ☐ 기타 ()%
1-3.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에게 별도 수당(인건비)이 지급되고 있는가? * 중상병원은 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해당기관 인건비를 받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참여병원원은 별도 수당(인건비) 지급 불가	☐ 예 ☐ 아니오
1-4. 업무추진비는 식비, 다과 및 소모품, 임차료로 지침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식비(20,000원/인(다과 포함), 외부 위원 회의 시), 다과(4,000원/인, 내부교육 및 회의 시)	☐ 예 ☐ 아니오
1-5. 교육 및 워크숍, 자문 등은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 교육(최소 2달에 1번), 워크숍(연 1회), 자문(방문, 서류자문 등)	☐ 예 ☐ 아니오
1-6. 2022년도 현재(조사시점) 총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 집행률 = 실집행액/총예산액 * 100	총 예산: _____ 원 실집행액: _____ 원 집 행 률: _____ %
1-7. 여비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관련 등 지침에 맞는 지출인가? * 예방·관리사업 관련 교육, 워크숍, 현장자문, 감염 관련 학회	☐ 예 ☐ 아니오
1-8. 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에 지출된 금액이 있는가? * 집행지침 카드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 참고	☐ 예 ☐ 아니오
1-9.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매한 물품이 관련 기관의 재물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가?	☐ 예 ☐ 아니오
1-10. 국고보조금의 사용주체는 감염관리실 및 감염 전담인가?	☐ 예 ☐ 아니오
1-11. 해당년도 내 국고보조금 사용(지출)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조사내용	결과
2. 국고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2-1. 집행지침에 명시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교육: 방명록, 결과보고서, 영수증 등, 재료비: 견적서, 내부결재 등 여비: 관련 공문 및 출장복명서, 교통비 영수증 등	☐ 예 ☐ 아니오
2-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가입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2-3. e나라도움 통장(카드)이 개설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2-4. 국고보조금 교부 전 사용된 지출에 대해 지급완료가 되었는가? e나라도움 기타증빙으로 증빙서류 제출 후 e나라도움 콜센터에 지급요청	☐ 예 ☐ 아니오
2-5. 지출요청서는 결재(내부)과정을 거친 후 지급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기타	
3.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및 국고보조금 집행 시 바라는 점 또는 개선점을 적어주세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I

II

III

IV

V

서식 7 사업계획 변경서

사업계획 변경(요청, 보고)서

※ 사업 내용/인력/보조금 계획 중 변경 해당 항목만 작성

사업명			
사업수행 기관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	(원)

□ 사업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자세한 변경사유 내역은 서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인력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 보조금 집행계획 내역 ※ 변경하지 않는 비·세목 포함하여 전체 기재

비·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금액 (원)	구성비 (%)	금액 (원)	구성비 (%)	증감액 (원)	증감률 (%)	
총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붙임〉 변경 전·후 산출내역

※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시 작성, 변경되는 비·세목만 기재

비·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금액(원)	금액(원)	증감액(원)	증감률(%)
총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I
II
III
IV
V

서식 9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국고보조금

□ 사업기관:

□ 주 소:

□ 정산 내용

(단위 : 원)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이지발생액 (D)	비고

※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하여 정산

()년도 정산내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기관:

책 임 자: (인)

보건소장 귀하

서식 10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집행현황**

()년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집행현황

병원명: ○○병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황					비 고
	수령액 (A)	집행액 (B)	집행 잔액 (C=A-B)	이자 발생액 (D)	반납액 (E=C+D)	
계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현황			비 고
소속	성명	입사일 (근무경력)	

서식 1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항 목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집행률 (D)	비고
비목명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전체 총액						

※ 각 항목은 산출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 부 액(A): 교부받은 예산액

집 행 액(B): 원인행위(실제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 포함)로
집행한 예산액

집행잔액(C): 교부액(총액)(A)－집행액(B)

집 행 률(D): 교부액(총액)(A)을 기준으로 집행현황(%)

서식 12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내용

의료기관 지원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내용

날짜	각 항목명	소요금액

총액: _____ 원

서식 13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영수증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정산 영수증

〈비 고〉

영수증 별첨

기타 참고사항 등 기록해야 할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총 액: _____ 원

I
II
III
IV
V

서식 14 교육 및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양식

교육 및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예시)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예산항목: 업무추진비(교육 및 회의 경비)
- 사용경비총액: 원

※ 관련 영수증 첨부란

서식 15 교육 및 회의결과 보고서 양식

교육 및 회의결과 보고서

예시) 회의결과 보고서
○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회의 및 교육 내용 기재

년 월 일
책임자: (인)

I
II
III
IV
V

서식 16 **병원**

‘0000’ (회의명)

년 월 일()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응답명	계좌번호	서명	비고
1							내부위원
2							
3							외부위원
4							
5							
6							

서식 17 출장복명서

출장복명서

20 . . .

소 속: _____

출장자: _____

1. 출장기간: 20 . . .

2. 출장기관 및 장소:

1)

2)

3. 출장목적:

1)

2)

4. 출장내용:

1)

2)

3)

년 월 일

책임자: (인)

서식 18 유류비사용대장

〈유류비사용대장〉

년 월분

날짜	시간	목 적	주유량(L)	출발지	목적지	소요거리(km)	사용자

년 월 일

책임자: (인)

서식 19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년 월분					
날짜	시간	목 적	목적지	소요금액	사용자
총 계					

년 월 일
책임자: (인)

서식 20 출장 경비 증빙서류

예시) 출장경비 사용 영수증

- 출장명:
- 출장일시:
- 출장장소:
- 출장자:
- 사용경비총액: 원

※ 관련 영수증 첨부란

Part V

관련 규정 및 자주 묻는 질문

참고 1. 관련 법령

참고 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참고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참고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참고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참고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참고 8.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참고 9. 자주 묻는 질문

Part V

관련 규정 및 자주 묻는 질문

참고 1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 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다.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라.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별도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정(計定)을 말한다.
4.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5.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증’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사업
2.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대한 분담금
3. 해외 긴급구호 등 재난 또는 재해 지원 사업

I

II

III

IV

V

4. 북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 사업
5. 저개발 국가의 보건복지 지원 사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포함)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운용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운용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 검토
2. 보조사업 집행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
3.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개정

③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3.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제6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재정운용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

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금법」제17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 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지원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4. 기타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관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국비와 매칭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부지확보 여부(보조사업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선정 및 지원 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보조사업부서는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준정부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분야별 보조사업을 고려하여 실별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에는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외에 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실별로 정한다.

제11조(보조사업 적격성심사) ① 신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관리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적격성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위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중 적격성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에 대하여도 실시한다.

②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격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적격성심사 면제사업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보조사업 적격성심사 표준모델」을 적용한다.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하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결정통지서에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이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I

II

III

IV

V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위탁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업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 인정한다.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기간 중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등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서 등이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금액에 포함한다.

제15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공통적용 제한 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는 별표 3의 자율적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등은 별표 3의 카드사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별도계정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등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정(計定)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③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조치한 사항을 재정운용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해당 사실을 재정운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운용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

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모든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2(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기획, 설계 등을 관리하는 사업. 단 공사 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게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

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보조사업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⑤ 보조사업부서는 장기 미납된 보조금 잔액등에 대하여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같은 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2. 집행 잔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발생)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 내역(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을 초과액을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① 보조사업부서는 교부한 보조금이 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액과 그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부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부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산보고서 작성)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이 작성하는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 비목 및 보조 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보조사업자등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 보관)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계산증명규칙」 제2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2.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4.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제26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실별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하 '점검평가단'이라 한다)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실별 점검평가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점검평가단의 집행점검 총괄업무는 주무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반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반원을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① 점검평가단은 보조사업부서의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의 수립여부를 확인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I

II

III

IV

V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 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2.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 ③ 점검받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점검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평가단에 제출하고, 점검평가단은 재정운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구입 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제30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호의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

제3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평가 사후 조치)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산요구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I

II

III

IV

V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부정수급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외에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1호서식)할 수 있다.

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재판결과의 확인,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또는 부과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의 정지 및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등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변경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과오납의 환급)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부와 등과 관련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8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재판결과와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사무의 위임 등) ①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부서는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② 보조사업부서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0조(부정수급 관련 정보관리)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I

II

III

IV

V

② 재정운용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보조사업자 회계감사) ①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다른 나라의 준정부기관인 경우
3.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7.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42조(보조사업자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7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I

II

III

IV

V

참고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자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3장 기타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II

III

IV

V

참고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3.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7.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8.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

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2.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I

II

III

IV

V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II

III

IV

V

참고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증기관이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선정원칙)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제7조(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증업무의 범위 등)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수행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에게 수정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증업무의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기한(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수립)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현황,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와의 관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승인내역,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다른 검증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증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검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기관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검증보고서일)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제15조(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①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 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 ③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제17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 기한(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등 검증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검증보고서는 제1항의 실적 보고 기한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II

III

IV

V

참고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석

제3조(적용범위)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 ② 주석 양식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제2장 감사인

제5조(감사인 자격)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 선임) ①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7조(감사인 해임)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8조(감사인 선임 등 보고)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I

II

III

IV

V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제11조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특정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3장 회계감사

제11조(회계감사기준) 감사인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 ② 특정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④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3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감사와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특정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기준)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제18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특정사업자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I

II

III

IV

V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추진배경

- 2014. 12. 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구축하고, 2017. 1월부터 일부 개통(2017. 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2. e나라도움 사용 대상

- 지자체 보조사업
 - 지자체 보조사업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e-호조를 통한 지출 내역이 e나라도움에 자동적으로 연계
 - 지자체보조사업중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사업은 각각의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서 보조금 비목*이 아닌 유사 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관리
 -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대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 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 민간보조사업
 -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자(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지정)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 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I

II

III

IV

V

3.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 (1단계) 사전 검증
 - 수급자 자격 검증,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세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 (3단계) 집행·사후 검증
 -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 이중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자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4.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 준비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활용

사전준비사항

1. e나라도움 인터넷 주소 : www.gosims.go.kr
2. 보조사업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요(개별은행 무료 발급)
 - ※ 사용자교육, 맞춤형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공 www.gosims.go.kr 접속하여 수시 확인하여 업무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참고 8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감염병예방법 2022. 1. 13. 시행)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아토틀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¹⁾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폴리오마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르페스인플루엔자 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쓰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규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쳐. 치쿤구니아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니. 메타실론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²⁾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³⁾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⁴⁾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⁵⁾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⁶⁾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P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타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시아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사카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참고 9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인력은 감염관리전담간호사나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까?**
 ☞ 인력은 우선적으로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감염관리실 소속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나 감염관리실장(의사)이어야 합니다.
2.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언제까지 운영하는 것입니까?**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운영이 어렵게 될 시에는 즉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는 언제 지급합니까?**
 ☞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를 각 시·도에 교부하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와 상의하여 운영합니다.
4. **운영비를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인력 개인통장으로 지급해도 됩니까?**
 ☞ 보건소는 운영비를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5. **당해연도 운영비를 다음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당해연도 예산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 국고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외부 전문 회계 법인에 정산심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발행 : 2022. 4.

발행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

홈페이지 : <http://www.cdc.go.kr/>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 043) 719-7586

팩스 : 043) 719-7599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지침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TEL. 043-719-7586

FAX. 043-719-7599

